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젠더리뷰

국내·외 정책동향

- 해외
- 국내

해외*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핀란드의 친밀한 파트너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IPV) 법적 대응 방향 논의¹⁾

- 핀란드 차별금지 옴부즈맨 레이너 힐튀넨(Rainer Hiltunen)은 지난 1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즉 배우자 및 파트너 간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IPV)에 대한 법적 보호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하였다. 차별금지 옴부즈맨은 핀란드 「차별금지법(Non-Discrimination Act)」에 근거해 설치된 독립 국가기관으로, 피해자 지원, 정부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시정 권고, 차별 및 폭력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발언은 핀란드 국가검찰청(National Prosecution Authority)이 지역 법원의 가정폭력 사건 처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형법적 개선 방향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본고는 핀란드의 친밀한 파트너 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핀란드 지역 법원의 가정폭력 사건 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점이 절반 이상의 사건에서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핀란드의 친밀한 파트너 폭력 대응의 법·제도적 기반이 되는 이스탄불 협약(Istanbul Convention)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 이스탄불 협약은 여성에 대한 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유럽평의회 협약(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Preventing and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으로, 핀란드에서는 2015년 8월 1일 발효되었다. 협약에 따라 핀란드 보건사회부 산하에 국가 조정기구인 ‘여성폭력 및 가정폭력 대응 위원회(Committee for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 NAPE)’가 지정되어 있다. NAPE는 협약의 국내 이행 조정, 이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구체적 이행을 위한 국가 행동계획(Action Plan)

* 해외 여성통신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국제동향 중 「해외통신원」 주요 기사를 정리한 것임.

1) 윤선우, 옥스퍼드대학교(University of Oxford) 사회정책학 박사과정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구체적으로 이스탄불 협약은 여성에 대한 폭력 및 가정폭력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비례적인 제재를 요구한다. 힐튀넨 옴부즈맨은 현행 핀란드 형법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명확한 가중처벌 규정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조사에 따르면, 핀란드 전역의 지방법원에서 다룬 80건의 가정폭력 사건 대부분은 파트너를 대상으로 한 폭력이었고, 가해자는 대체로 남성이었다. 사건의 약 94%는 유죄 판결로 종결되었으나, 상당수가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55%의 사건에서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점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45%의 사건에서도 해당 관계가 언급되었음에도 처벌 수위가 실질적으로 강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힐튀넨 옴부즈맨은 현재 또는 과거의 배우자·파트너를 대상으로 한 폭력은 낯선 사람에 대한 폭력보다 더 중대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이를 형법상 명시적 가중처벌 사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한편, 핀란드 정부는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핀란드 보건복지연구소(THL)이 2025년 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이용자는 총 5,979명으로 전년 대비 180명 증가하였다. 현재 핀란드에는 총 28개의 쉼터가 운영 중이며, 가족 단위 또는 단독 피해자를 위한 228개의 보호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이는 올해 243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핀란드 보건사회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Nollalinja’ 헬프라인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Seri Support Centres) 운영을 지원하며, 상담 및 트라우마 회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이와 같이 피해자 지원 인프라는 점진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나, 최근 옴부즈맨의 권고에 비추어 볼 때 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특수성을 형법상 명확히 반영하는 등 보다 직접적인 법적 대응 강화가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 Daily Finland (2026.01.28.). "Domestic violence victims on rise in Finland", <https://www.dailyfinland.fi/national/47525/Domestic-violence-victims-on-rise-in-Finland> (접속일자: 2026.02.10.)
-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2025.10.09.). "Combating domestic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https://stm.fi/en/combating-domestic-violence> (접속일자: 2026.02.11.)
- YLE NEWS (2025.07.03.). "Non-discrimination ombudsman denied second term, new ombudsman Rainer Hiltunen", <https://yle.fi/a/74-20170834> (접속일자: 2026.02.10.)
- YLE NEWS (2026.01.20.). "Non-Discrimination Ombudsman calls for stricter penalties for intimate partner violence", <https://yle.fi/a/74-20205484> (접속일자: 2026.02.11.)

아일랜드, 국가 자궁내막증 관리 체계 발표²⁾

- 2025년 10월, 아일랜드 정부는 아일랜드 자궁내막증 관리 국가 프레임워크(National Framework for the Management of Endometriosis in Ireland)를 발표하며 자궁 내막증을 앓고 있는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임상 치료 경로를 제시하였다. 이는 그간 병원별 역량과 전문 인력에 따라 단편적으로 운영되던 진료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정비하고, 일차 진료에서 2·3차 전문 진료로 이어지는 관리 구조를 공식화하겠다는 조치다. 단순한 서비스 확대를 넘어 자궁내막증을 공적 보건 의제로 재위치시키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 아일랜드에서 자궁내막증은 오랜 기간 과소 인식되고 과소 치료되어 온 질환이다. 아일랜드 보건청(Health Service Executive)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자궁내막증 관련 진료 및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 수는 약 900명에 달한다. 이는 단순한 대기자 수의 문제가 아니라 진단 지연과 전문 치료 접근성의 한계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인력, 시설, 전문 기술, 예산의 제약 속에서 자궁내막증은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상대적으로 밀려나 있었으며, 그 결과 연구 투자와 전문 서비스 확충 역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은 의료 전달체계의 문제를 넘어 질환에 대한 인식과 관리 방식 전반의 한계를 드러낸다.
- 자궁내막증은 자궁내막과 유사한 세포가 자궁 외부에 증식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골반 내 장기뿐 아니라 장, 방광, 드물게는 횡격막이나 폐 등 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확한 병인은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나 호르몬 의존적 특성을 보이며 가임기에 주로 발생한다. 아일랜드에서는 여성 7명 중 1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흔한 질환으로 추정되지만, 현재까지 완치법은 없으며 치료는 통증 완화와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둔다. 만성 골반통, 소화기 증상, 피로, 정신건강 문제 등 다양한 증상은 학업·직업·사회적 관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은 종종 ‘월경통의 연장선’으로 축소 해석되거나 정상적 경험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이러한 인식은 의료적 대응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단순한 서비스 확충이 아닌 ‘추정 진단(presumed diagnosis)’의 공식화에 있다. 기존에는 복강경 수술을 통한 병리학적 확인이 사실상 유일한 확정 진단 방법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는 침습적 시술이라는 한계를 가지며, 일차 진료 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렵다. 결과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장기간 통증을 호소하면서도 확정 진단을 받기까지 수년을 기다려야 했다. 진단 이후에 치료를 시작한다는 전제가 오히려 치료 개입을 지연시키는 구조로 작동해 온 셈이다. 이에 아일랜드 정부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임상적으로 자궁내막증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치료를 시작하도록 방향을 전환하였다. 약물 치료와 호르몬 억제 치료를 우선 적용하고, 증상이 호전될 경우 반드시 수술을 통한 확정 진단을 요구하지 않는 모델이다. 이는 ‘확정 후(後) 치료’에서 ‘증상 기반 선(先)치료’로의 접근

2) 이지원, 런던열대의학위생대학(London School of Hygiene & Tropical Medicine) 개발보건학 석사

방식 변화를 의미한다.

- 추정 진단의 제도화는 자궁내막증이 오랫동안 정상적 월경통으로 축소되어 온 맥락을 고려할 때, 환자의 통증 경험을 의료적으로 신뢰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진단 지연으로 인한 이차적 피해를 줄이고 질환 부담에 조기 개입하겠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다. 다만 이 모델이 실질적 효과가 있으려면 일차 진료에서의 충분한 상담 역량과 약물 접근성, 중증 환자를 적시에 2·3차 의료기관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전문 인프라가 병행되어야 한다. 선치료 전략이 오히려 수술적 개입이 필요한 사례의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명확한 의뢰 기준과 수술 역량 확보가 요구된다.
- 실제로 의회, 시민단체, 환자 단체에서는 프레임워크 발표와 함께 일차 진료 중심 모델에 대한 의문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중증 환자에 대한 수술 역량이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아일랜드는 임시 대응책으로 자궁내막증 해외 수술 프로그램(Endometriosis Surgery Abroad Interim Scheme, ESAIS)을 운영하고 있다. 일정 요건³⁾을 충족하는 환자는 해외 지정 의료기관에서 수술 받을 수 있으며 수술비와 기본 항공료가 지원된다. 그러나 체류비와 기타 비용은 개인 부담이며, 일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센터나 전문 외과 의사 승인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 이번 프레임워크는 자궁내막증 관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추정 진단의 공식화는 진단 지연을 완화하고 치료 개입을 앞당기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다만 그 효과는 진단 기간 단축, 통증 완화, 수술 대기 감소 등 구체적인 성과를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다. 아울러 인력, 시설, 재정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변화는 선언적 조치에 머물 가능성도 존재한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행 역량을 뒷받침할 인력 확충, 시설 투자,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gov.ie (2025.10.28.). "Minister for Health launches Ireland's first National Endometriosis Framework", <https://www.gov.ie/en/department-of-health/press-releases/minister-for-health-launches-s-irelands-first-national-endometriosis-framework/> (접속일자: 2026.02.19.)
- HSE (2025.10.). "A National Framework For The Management Of Endometriosis In Ireland". <https://about.hse.ie/publications/a-national-framework-for-the-management-of-endometriosis-in-ireland/> (접속일자: 2026.02.19.)
- HSE (2025.10.18.). "Endometriosis Surgery Abroad Interim Scheme", <https://www2.hse.ie/services/schemes-allowances/endometriosis-surgery-abroad-interim-scheme/#costs-covered-by-the-esais> (접속일자: 2026.02.19.)
- Irish Mirror (2025.12.8.). "Government blasted for not taking women's health seriously as endometriosis care figures released", <https://www.irishmirror.ie/news/irish-news/politics/government-blasted-not-taking-womens-36365439> (접속일자: 2026.02.19.)

3) ESAIS 신청 요건 ① 아일랜드 거주자일 것 ② 아일랜드 내 공공 또는 민간 수술 대기자 명단에 등재되어 있을 것 ③ 아일랜드 의료위원회에 등재되어 있거나 HSE 소속인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해외 수술 필요성에 대해 권고를 받을 것 ④ 아일랜드 내 수술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을 것

오스트리아,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국가 행동계획 채택⁴⁾

- 오스트리아 연방정부는 지난해 11월 말,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대응 정책의 범정부적 지침이 될 「2025~2029 여성·여아 대상 폭력 근절 국가 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against Violence against Women 2025-2029)」을 공식 채택했다. 이 문서는 약 24페이지 분량으로, 이번 계획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2026년까지 완료해야 할 구체적인 입법 과제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집행 방안을 담고 있다. 본고에서는 행동계획 수립 전·후 맥락과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오스트리아 정부가 발표한 이번 국가 행동계획은 정책 수립 초기 단계부터 현장 실무자와 학계, 행정기관, 정책 의사결정자들이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통해 완성되었다. 주제별 실무 그룹과 다수의 하위 워킹그룹에는 250명 이상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치열한 논의 끝에 350여 개에 달하는 방대한 정책 과제를 도출했다. 이렇게 마련된 과제들은 최종적으로 정치적 조정 기구의 검토 대상이 되었고,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각 과제의 재정적, 기술적 타당성을 면밀히 조율한 끝에 국가적 차원의 최종 행동계획으로 확정되었다. 각 분야별로 세부 목표와 주관 부처, 목표 달성 연도를 명시하고 있다. 여성 대상 폭력 국가조정기구의 주관 아래에 수립된 본 행동계획은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산하 위원회(GREVIO)의 권고안과 감사원의 지적 사항은 물론, 유럽연합(EU) 지침(2024/1385), 기존의 정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정책적 완성도를 높였다.⁵⁾ 그리고 이번 국가 행동계획은 이스탄불 협약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여성 폭력을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 구조적 문제로 정의하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주 배경 여성과 장애 여성, 고령 여성 등 다층적 차별에 노출된 취약 계층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이들의 폭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체계 구축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 본 행동계획은 출신, 연령, 장애 여부, 직업, 생활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과 여아는 폭력 없는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수립됐다. 그리고 사회 변화와 국제적 의무, 여성과 여아들의 다양한 삶의 현실을 반영해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 정책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내용들이 포함됐다. 그 결과, 국가 행동계획은 다음 총 8개의 중점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1) 유아기부터 대학까지 폭력 없는 성장 환경 조성, 2) 비폭력적 노동환경과 경제적 자립, 3) 사적·공적 공간에서의 폭력 근절, 4) 디지털·미디어 영역에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참여, 5) 예술·문화·체육 분야에서의 폭력 예방, 6) 사전 예방을 통한 폭력 차단, 7)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조기 발견과 신체적 자기결정권 보호, 8) 특별한 취약성을 고려하는 여성·여아 보호 조치.
- 또한 오스트리아에서는 2025년 연방부처법(Bundesministeriengesetz) 시행에 따라 여성 정책 지형이 새롭게 재편됐다. 기존에 연방총리실 산하에 있던 여성 정책 부서는

4) 곽서희, 레이든 대학교(Leiden University) 정치학과 방문연구원(Guest Researcher)

5) GREVIO(Group of Experts on Action against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유럽평의회 이스탄불 협약을 비준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협약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는 국제적 독립 전문가 기구이다.

독립성이 강화된 여성·과학·연구부(Federal Ministry for Women, Science and Research)로 전격 이관됐다. 이에 따라 해당 부처는 향후 5년간 추진될 본 행동계획의 이행을 감독하고, 관련 기관 간 조율을 총괄하게 된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오는 2029년까지 폭력 예방과 조기 발견, 대응 체계 강화는 물론 피해자 보호 확대와 가해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구체적인 정책 조치들을 실행에 옮길 방침이다.

- 한편, 정부가 발표한 행동계획을 두고 일각에서는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오스트리아 국영방송 ORF의 보도에 따르면, 자유당(FPÖ)과 녹색당(Die Grünen) 측은 연방정부의 대응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로자 에커(Rosa Ecker) 자유당 여성 대변인은 “여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적인 수준의 담론이 아니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보호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폭력 예방과 관련해 수많은 정책적 약속을 반복하고 있지만 정작 발표된 내용들은 모호하고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메리 디소스키(Meri Disoski) 녹색당(Die Grünen) 대변인은 이번 행동계획을 두고 구속력 없는 눈속임 포장이라고 평가하면서, 문서만으로는 여성 한 명도 보호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 이 밖에도 본 행동계획이 채택되기 전인 작년 6월, 비엔나 노동자회의(Arbeiterkammer Wien)는 자체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재원 조달 및 운영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재정 긴축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전체 예산 대비 여성정책 관련 예산 항목이 비중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그 전체적인 예산 수준은 여전히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충분한 예산 확보와 더불어 계획된 정책과 사업을 위한 체계적인 재원 배분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⁶⁾
- 오스트리아 연방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국가 행동계획은 모든 여성과 여아가 폭력으로 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구조적 변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오랫동안 제기돼 온 국내외의 요구를 포괄적인 정책 계획으로 구체화하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앞으로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향성을 제시한 만큼 현실적인 성과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할 만하다.

• 참고문헌 •

- Arbeiterkammer Wien (2025). “Doppelbudget 2025/26: Knappe Mittel und neue Prioritäten”, Working Paper-Reihe der AK Wien – Materialien zu Wirtschaft und Gesellschaft, June 2025, https://wien.arbeiterkammer.at/interessenvertretung/wirtschaftswissenschaften/Doppelbudget_2025-2026.pdf (접속일자: 2026.02.15.).
- Bundesministerium für Frauen, Wissenschaft und Forschung (2025). “Nationaler Aktionsplan zur Bekämpfung von Gewalt gegen Frauen und Mädchen 2025–2029 der Bundesregierung (National Action Plan against Violence against Women 2025–2029),” https://www.bmfwf.gv.at/frauen-und-gleichstellung/nap_gegen_gewalt_an_frauen.html (접속일자: 2026.02.15.).
- ORF (2025.11.26.). “Regierung beschloss Aktionsplan (The government adopted an action plan),” <https://orf.at/stories/3412646/> (접속일자: 2026.02.15.).

6) 오스트리아에는 법정 의무 가입제에 따라 모든 임금 노동자들이 가입하고 이들을 대변하는 법정대리기구인 노동자회의(Arbeiterkammer)가 설립되어 있다. 각 연방 주마다 관할 기구가 있으며, 노동자를 위한 법률 상담과 정책제언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조직이다. 비엔나 노동자회의(Arbeiterkammer Wien)는 비엔나 주의 노동자를 담당한다.

AI와 여성 안전 : 호주 국가 AI 계획⁷⁾

- 전 세계적으로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정책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각국 정부는 기술 혁신과 위험 관리 사이의 균형을 고민하고 있다. 호주 역시 최근 국가 AI 계획(National AI Plan)을 발표하며, AI 기술의 경제적 활용뿐 아니라 안전, 규제, 사회적 영향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제시하였다. 본 원고는 호주의 AI 정책이 여성 안전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 살펴보고, AI 확산이 여성 대상 폭력 예방, 온라인 안전, 그리고 기술 접근성과 역량 강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젠더 불평등 및 젠더 폭력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 짚어본다. 또한, 한-호 협력의 현황과 의미도 함께 검토한다.
- 2025년 12월 발표된 국가 AI 계획은 경쟁력 있고 회복 탄력적인 AI 기반 경제 구축을 목표로 하면서, 모든 지역과 산업, 공동체가 AI 발전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포용적 AI’를 강조한다. 특히 중소기업(small businesses)과 광역권(Metropolitan areas) 외 지역이 AI 활용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점을 명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담론은 젠더 관점에서 볼 때 기술 접근성과 역량 형성 과정에서 기존 불평등이 어떻게 재생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동시에 제기한다.
- 국가 AI 계획은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지능형 인프라 구축과 국내 AI 역량 강화를 통해 AI 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다. 둘째, AI 도입 확대와 직원 교육 및 역량 강화를 통해 AI 혜택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이다. 셋째, AI로 인한 잠재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규제 및 입법 체계를 구축하고 책임 있는 AI 활용과 국제 협력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기술 혁신을 추진하면서도 위험 관리 필요성을 인정하는 정책적 균형으로 볼 수 있다.
- 특히 국가 AI 계획은 모든 호주인이 젠더, 지역, 나이를 넘어 AI로부터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직장 내 AI 역량(AI capacity)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 접근성과 교육 기회는 기존의 사회적·젠더적 불평등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단순한 역량 강화 정책만으로는 젠더 격차를 해소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AI 정책이 실제로 포용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젠더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 동시에 AI 확산은 새로운 위험을 동반한다. 딥페이크와 같은 AI 기반 범죄와 기술 매개 폭력(Technology-Facilitated Abuse)은 이미 주요 정책 의제로 떠올랐다. 호주 정부 역시 국가 AI 계획에서 이러한 위험을 인정하며, AI가 새로운 안전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여성과 소수자 집단이 이러한 위험에 불균형적으로 노출된다는 점에서, AI 안전 정책은 단순한 기술 규제를 넘어 젠더 기반 폭력 예방과 긴밀히 연결될 필요가 있다.
- 2026년 현재 호주는 혁신과 안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AI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온라인안전위원회(eSafety Commissioner)를 통해 기술 매개 학대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부 기관에는 딥페이크 및 데이터 보안 침해와 같은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보호장치(guardrails)를 포함한 책임 있는 AI 사용 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7) 조혜인, 모나시대학교 Global Studies 조교수·서울대학교 여성연구원 객원연구원

접근은 AI 거버넌스를 단일 규제 영역이 아닌 사법, 기술, 정책, 연구 분야가 연계된 다층적 정책 체계로 구성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기술 매개 및 이미지 기반 폭력뿐만 아니라, 기술 매개 강압적 통제 (Technology-facilitated coercive control' TFCC)에 관한 논의와 연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 이러한 흐름은 국가 정책을 넘어 초국가적 협력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최근 젠더 기반 폭력 예방을 위한 국가 간 교류와 정책 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호주 역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움직임에 참여하고 있다. 호주 외교통상부(Australia- Korea Foundation, DFAT)는 한국과 함께 온라인 성적 피해 대응 경험을 공유하는 한-호 젠더 폭력 전문가 교류 사업을 2023년부터 지원해 왔으며, 올해 2월에는 양국의 연구자와 정책 전문가, 활동가들이 호주 멜버른에 모여 기술 매개 폭력과 AI 안전을 둘러싼 공통 과제를 논의하고 협력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는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디지털 젠더 기반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학습(policy learning)의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 Australian Government (2024). The Seoul Declaration by countries attending the AI Seoul Summit, 21-22 May 2024, <https://www.industry.gov.au/publications/seoul-declaration-countries-attending-ai-seoul-summit-21-22-may-2024> (접속일자: 2026.01.13)
- Attorney-General's Department (2024). Understanding technology-facilitated coercive control. <https://www.ag.gov.au/families-and-marriage/publications/understanding-technology-facilitated-coercive-control> (접속일자: 2026.01.13)
- e-safety Commissioner (2021). Australia and the Republic of Korea jointly denounce image-based abuse, <https://www.esafety.gov.au/newsroom/media-releases/australia-and-republic-korea-jointly-denounce-image-based-abuse> (접속일자: 2026.01.13)
- Department of Industry, Science and Resources. (2025). National AI Plan. <https://www.industry.gov.au/publications/national-ai-plan> (접속일자: 2026.01.13)
- Monash University. (2025). Responding to Technology-Facilitated Gender-Based Violence: Australia-Korea Partnership. <https://www.monash.edu/arts/gender-and-family-violence/-archived-research-and-projects/responding-to-technology-facilitated-gender-based-violence> (접속일자: 2026.02.17)

핀란드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개편과 이민 가정에 대한 아동 돌봄 수당 제한 논의⁸⁾

- 핀란드의 4자 연립정부는 2026년 2월 중순, 이민자 가정의 아동 돌봄 수당(home care allowance) 접근 요건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해당 조치는 페테리 오르포(Petteri Orpo) 총리가 추진하는 사회보장 및 이민 통합 정책 개혁의 일환으로, 핀란드 정부는 핀란드에 새로 도착한 부모가 최소 3년간 핀란드에서 거주해야 돌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주 요건 도입에 합의하였다. 이는 거주 기간과 복지 수급 자격을 연계함으로써 새 이민자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소위 '복지 목적 이민(welfare migration)'을 억제하려는 정책적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핀란드에서 이

8) 윤선우 | 옥스퍼드대학교(University of Oxford) 사회정책학 박사과정

루어지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전반적 방향과 이민 가정에 대한 돌봄 수당 제한 논의 및 관련 비판을 살펴보고자 한다.

- 핀란드 사회보험기관인 Kela는 2026년 기초 생계보조금(basic social-assistance scheme)제도에 대한 여러 개정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삭감 조치들은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핀란드 정부는 이번 개정이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수급자들이 기초 생계보조금 이외의 가능한 모든 지원책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Kela의 재량을 확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적 지원을 줄이거나 정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가 최후의 안전망 기능에 충실하도록 개편하려는 목적도 포함된다.
 - 예컨대 실업수당, 학생 지원, 주거지원, 육아휴직 급여, 연금, 병가 수당 등 지원가능한 다른 주요 현금 수당들을 먼저 신청했음을 입증해야 기초 생계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생계보조금이 50% 삭감될 수 있다.
- 이번 개정은 사회보장 지원을 ‘최후의 수단(last-resort)’으로 재정립하는 방향에서, 특히 일할 능력이 있고 구직 활동 또는 다른 사회적 혜택을 먼저 신청할 수 있는 이민자들에게 추가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이는 가족 수당을 거주 기간과 연계하는, 이른바 ‘노르웨이 모델(Norwegian model)’에 보다 근접하려는 핀란드의 정책적 시도이기도 하다.
- 이러한 방향성은 2025년 여름, 근로 요건을 강화한 덴마크의 사례와도 비교되며 핀란드 내에서 찬반논쟁이 있었다. 덴마크는 최근 10년 중 9년 미만 덴마크에서 거주했고 정규직 근무 경력이 2.5년 미만인 경우, 공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당 최대 37시간의 지정 활동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지정 활동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직한 쓰레기 수거, 기부 의류 분류, 요양시설 보조 업무 등이 포함되며, 해당 시간의 일부는 감독하에 진행되는 언어 교육이나 구직 활동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덴마크의 사례는 2026년 2월 초, 핀란드 재무장관이자 핀란드인당(Finns Party) 대표인 리카 퓨라(Riikka Purra)가 일부 이민자들이 거주권 확보를 위해 저임금 일자리를 얻은 뒤 일을 그만두는 현상을 비판하며 언급한 뒤 정치적 논쟁으로 확산되었다.
- 이에 대해 핀란드 보건복지연구소(Finnish Institute for Health and Welfare) 소속 연구교수 파시 모이시오(Pasi Moisio)는 덴마크 모델을 핀란드에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핀란드의 제도적 맥락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어 어려울 것이라 주장했다. 먼저 핀란드는 헌법에서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생계 보장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이민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덴마크는 핀란드와 비교해 보다 폭넓은 고용 및 통합 서비스를 갖추고 있으며, 핀란드는 상대적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소극적인 소득 이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근로 요건 확대가 덴마크에서의 효과만큼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러한 사회보장 개혁 기초 속에서 이민 가정의 아동 돌봄 수당 접근 강화 조치가 이루어졌다. Kela는 현재 약 63,000가구가 해당 수당을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9%가 이민자 배경 가정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16세 이후 핀란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부모는 3세 미만 자녀를 집에서 돌보기 위해 가정에 머무를 경우 해당 수당을 받을 수 없다. 다만, 3년 거주 요건에는 다른 유럽연합(EU) 또는 유럽경제 지역(EEA) 국가나 스위스에서 거주한 기간도 포함된다. 이 변경 사항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법이 시행된 이후 핀란드로 이주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또한, 해당 요건은 양쪽 부모 모두에게 동시에 적용되지는 않으며, 한부모 가정의 경우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에게만 적용된다.

- 핀란드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민자와 영주 거주자 간 사회보장 접근을 구분하는 보다 광범위한 사회보장 개편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현재 관련 법안은 헌법의 평등권 조항과 기본적 사회보장권 심사 과정으로 인해 제안이 지연되었으며, 2026년 봄에 의회 제출될 예정이다.
 - 해당 법이 통과되면, 기업의 인사 및 글로벌 모빌리티 유관 부서에도 생활비 및 수당 등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규정을 반영해야 한다. 예컨대 신생아와 함께 입국한 해외 주재원의 배우자는 빠르게 취업하지 않을 경우 월 최대 375유로의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기업들은 인재 유치를 위해 추가 가족수당이나 보육 바우처를 제공해야 하는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 핀란드 정부는 근로 연령 이민자의 노동이나 직업훈련 참여 촉진과 거주 기간과 수당을 연계한 복지 재정 부담 완화를 주요 정책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핀란드 스웨덴인 민당(Swedish People's Party of Finland) 소속 일부 의원과 야당인 녹색당(Greens) 의원들은 이러한 조치가 비EU 출신 이민자 부모에게 불균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숙련 인력 유입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과 헌법에 근거하여 해당 조치를 비판하고 있다.
- 이러한 변화와 정치권의 논쟁들은 핀란드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개혁 및 이민정책 변화의 광범위한 흐름을 보여준다. 이는 EU의 자유 이동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신규 이주자와 장기 거주자의 사회보장 권리를 점차 구분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관련 사회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문헌 •

- Helsinki Times (2026.02.17.). "Finland to restrict home care benefit as Purra calls for work requirement", <https://www.helsinkitimes.fi/finland/finland-news/politics/28530-finland-to-restrict-home-care-benefit-as-purra-calls-for-work-requirement.html> (접속일: 2026.03.10.)
- VisaHQ (2026.02.15.). "Finland tightens social-assistance rules, linking benefits to immigrant integration compliance", <https://www.visahq.com/news/2026-02-14/fi/finland-tightens-social-assistance-rules-linking-benefits-to-immigrant-integration-compliance/> (접속일: 2026.03.12.)
- VisaHQ (2026.02.18.). "Government Moves to Curb Child-Home-Care Allowance for Recent Immigrants", <https://www.visahq.com/news/2026-02-18/fi/government-moves-to-curb-child-home-care-allowance-for-recent-immigrants/> (접속일: 2026.03.11.)
- VisaHQ (2026.02.18.). "Finland moves to limit home-care allowance eligibility for recent immigrants", <https://www.visahq.com/news/2026-02-17/fi/finland-moves-to-limit-home-care-allowance-eligibility-for-recent-immigrants/> (접속일: 2026.03.11.)
- YLE NEWS (2026.02.17.). "Finland moves to tighten Kela's home care allowance for newcomers", <https://yle.fi/a/74-20210817> (접속일: 2026.03.10.)

이탈리아, 육아휴직 관련 제도 개정⁹⁾

- 이탈리아 정부는 2026년 예산법(Legge di Bilancio 2026) 상 출산 및 양육 통합 관련 제도를 일부 개정하며 육아 지원 제도의 유연성을 강화했다. 이에 발맞춰 이탈리아 사회보장기구(INPS)는 2026년 예산안(법률 제199/2025호)에 따른 육아휴직 확대 시행을 위해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개편하고,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¹⁰⁾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의무 산전·산후 휴가와 별개로 부모가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및 자녀 질병 휴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급여 보전 수준을 높였다는 데 있다. 이 글에서는 주요 변경 사항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괄한다.
- 우선 눈에 띄는 변화는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기준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가 만 12세가 될 때까지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만 14세까지로 상향되었다. 이에 따라 임금근로자인 어머니는 의무 산후 휴가 종료 이후부터, 아버지는 자녀 출생 시점부터 자녀가 만 14세가 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입양 및 위탁 가정에도 동일한 권리가 적용된다. 또한 중증 장애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부모는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되었다.
- 이탈리아 육아휴직은 자녀별로 부여되는 독립적 권리로, 부모의 필요에 따라 연속해서 사용하거나 분할 사용이 모두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부모 합산 최대 10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별로는 여성과 남성 모두 최대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아버지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해 남성 근로자가 3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 사용 가능 기간이 7개월로 늘어나며 이에 따라 부모 합산 기간도 최대 11개월로 늘어난다. 한부모 가정이나 단독 양육권자의 경우 혼자서 11개월 전부를 모두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이번 개정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유급 육아휴직 제도 개편과 자녀 연령에 따른 급여 보전을 차등 적용이다. 기존에는 부모에게 주어지는 유급 육아휴직기간은 6개월에서 8개월 수준으로 제한적이었고, 부모 각자에게 할당된 기간도 명확하지 않았다. 개정 이후 유급 육아휴직 기간은 9개월로 일부 확대·고정되었으며, 부모 각자에게 할당된 양도 불가능한 3개월씩(총 6개월)과 상호 양도가 가능한 3개월로 구성된다. 한부모 가정이나 단독 양육권자는 유급 육아휴직 대상인 9개월 전체 기간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급여 수준은 자녀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초기 3개월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며, 이 혜택은 자녀가 만 6세가 되기 전까지만 인정된다. 만약 자녀가 만 7세 이상 14세 이하인 경우에는 급여 보전율이 30%로 낮아진다.
- 유급 인정 기간인 9개월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는 무급이지만, 가구 소득이 가구소득지표(ISEE)의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통상 임금의 30%를 받을 수 있다.¹¹⁾ 해당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탈리아 사회보장기구(INPS)에 신청서를

9) 광서희, 레이든 대학교(Leiden University) 정치학과 방문연구원(Guest Researcher)

10) 이탈리아 사회보장기구(Istituto Nazionale della Previdenza Sociale, INPS) : 공적연금, 실업급여 및 복지수당, 고용보험 등을 심사, 지급, 관리 등 이탈리아 사회보장 제도 전반을 담당하는 국가기관

11) 가구소득지표(Indicatore della Situazione Economica Equivalente, ISEE) : 가구 소득, 자산, 가구원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 수준을 수치화한 지표로, 사회복지 혜택의 수혜 자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공식적으로 활용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제출하고 자녀 연령 및 소득 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는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보장 장치이다.

- 이 밖에도 자녀가 아플 때 돌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녀병가 제도도 확대되었다. 각 부모가 자녀가 아플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는 기존 5일에서 2026년부터 10일로 두 배 늘어났다. 적용 대상 자녀 연령도 기존 만 8세에서 만 14세까지로 대폭 완화되었다.
- 이번 제도 개정으로 크게 변경된 사항은 없지만, 이탈리아에서 2025년부터 ‘신생아 지원금 제도(Bonus Nascita)’를 시행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저소득층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된 자녀 1인당 1,000유로(한화 약 175만 원)를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해당 지원금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 총소득 합산에서 제외된다. 신청 자격은 가구소득지표(ISEE) 4만 유로(한화 약 7천만 원) 이하 가정으로 제한되며, 자녀 출생·입양이나 위탁 편입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본 제도는 연간 예산 범위(2026년 기준 연간 3억 6,000만 유로, 한화 약 6,300억 원) 내에서 접수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지급되므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연중 늦게 신청한 가정은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
- 종합하면, 이번 제도 개정은 보다 나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범위 확대, 유급휴가 기간 및 급여 체계 개선, 자녀 질병 시 돌봄 휴가 기간의 확대는 근로자의 양육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Fiscomania (2026.01.21.). "Congedo parentale 2026: le nuove disposizioni per la malattia dei figli (Parental leave 2026: new provisions for children's illnesses)," <https://fiscomania.com/congedo-parentale-nuove-disposizioni/>
- Il Sole 24 Ore (2025.04.14.). "Inps, al via bonus nuovi nati, 1.000 euro per bimbi del 2025 (INPS launches new baby bonus, €1,000 for children born in 2025)," <https://www.ilssole24ore.com/art/al-via-bonus-nuovi-nati-contributo-tantum-1000-euro-ogni-figlio-AHGDq0J>
- il Patronato della CGIL (2026.01.22.). "2026: le novità sui congedi parentali e per malattia dei figli (2026: Updates on parental and sick leave for children)," <https://www.inca.it/notizie/1550-2026-le-novita-sui-congedi-parentali-e-per-malattia-dei-figli.html> (접속일: 2026.03.15.)
- INPS (2026.01.26.). "Messaggio numero 251 del 26-01-2026 (Message number 251 of January 26, 2026),"

영국, 직장 내 성별 임금 격차 완화 및 환경 대응 실행계획 발표¹²⁾

- 2026년 3월, 영국 정부는 직장 내 성별 임금 격차 완화와 환경 대응 실행계획(Landmark gender pay gap and menopause action plans)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기존 성별 임금 격차 보고 제도를 보완하여, 기업이 단순히 격차 공개를 넘어 격차 발생의 구조

12) 이지원, 런던열대의학위생대학(London School of Hygiene & Tropical Medicine) 개발보건학 석사

적 원인에 대응하는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2026년 4월부터 직원 수 25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별 임금 격차 데이터 공개와 함께 임금 격차 완화 및 환경 대응 실행계획을 자발적으로 작성·공개하도록 하는 시범 제도가 도입된다. 2027년 봄부터는 하위 법령을 통해 해당 계획의 작성 및 공개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 정부는 실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영역별 근거 기반 조치 목록을 참고 자료로 제시하였다. 해당 내용은 정책연구 기관인 행동통찰팀(Behavioural Insights Team)에서 수행된 직장 내 성평등 개선 연구와 노동 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의 환경 관련 문헌 검토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기업은 실행계획을 수립·공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것이 권고된다. 구체적인 다섯 가지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채용(Recruiting staff)

- 포용적인 채용 공고 작성과 구조화된 선발 절차 도입을 통해 다양한 지원자 확보를 유도한다.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제거, 경력 공백에 대한 과도한 설명 요구 완화, 성비를 고려한 평가자 구성 및 사전 정의된 평가 기준 적용 등을 통해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한다.

(2) 직원 개발 및 승진(Developing and promoting staff)

- 승진 과정에서 자기 추천제(self-nomination)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승진 후보를 자동으로 검토 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을 권장한다. 또한 행동 기반 피드백 제공, 멘토링 및 후원(sponsorship)¹³⁾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경력개발 기회를 강화한다.

(3) 조직 내 다양성 구축(Building diversity into your organisation)

- 성별, 인종, 장애 등 소수집단의 대표성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내·외부에 공유하도록 권고한다. 또한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공유함으로써 조직 차원의 책임성과 참여를 강화한다.

(4) 투명성 증대(Increasing transparency)

- 임금 및 승진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의사결정 참여와 조직 책임성을 강화한다. 또한 유연근무 및 휴가 제도의 실질적 활용을 보장하여 일·생활 균형 유지와 노동시장 이탈 방지를 지원한다.

(5) 환경기 노동자 지원(Supporting employees experiencing menopause)

- 관리자 대상 교육, 근무 환경 조정, 직업 건강관리 체계 내 지원, 직원 네트워크 구축, 조직 차원의 위험평가 등을 통해 환경기 노동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력 지속성을 지원한다.

- 이번 발표는 성별 임금 격차 완화와 환경 대응을 통합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정부가 돌봄 책임, 채용 구조, 성별 임금 격차를 개별적 현상이 아닌 상호

13) 후원(Sponsorship) : 조직 내 상급자가 특정 직원의 승진이나 프로젝트 참여 등 주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천하고 지원하는 제도로, 경력 관련 조언을 제공하는 멘토링과 달리 상급자가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 직원의 경력 발전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연결된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구조는 경력 초기 출산·육아 시기에 돌봄 부담에 따른 노동시장 이탈, 이후 재진입 과정에서의 제약, 그리고 중·후반 경력 단계에서 환경이라는 요인이 결합하면서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누적되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 이는 돌봄 경제(care economy)와 노동시장 구조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돌봄 책임이 특정 집단에 집중될 경우 노동시장 참여 방식과 경력 경로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채용, 경력 지속성, 승진 기회, 임금수준 전반에 걸쳐 불균형을 초래한다. 여기에 환경이라는 생애주기 요인이 결합될 경우 중·후반 경력 단계에서 추가적인 이탈 위험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고위직 성별 불균형과 궁극적인 성별 임금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 이번 정책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고숙련 여성 인력의 이탈 방지와 경력 지속성 확보에 초점을 둔다. 돌봄을 주로 담당하는 여성의 지속적 근무와 재진입을 지원하고, 환경 시기에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고위직으로 갈수록 나타나는 성별 불균형 완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 한편, 이번 정책은 직원 250명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적용 범위의 한계를 지닌다. 중소 규모 사업장은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여성 노동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파트타임·시간제 근로 비유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본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는 집단은 비교적 안정적인 고용 형태에 속한 여성 노동자에게 한정될 가능성이 있다.
- 이에 따라 정책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는 노동자 집단에 대해서는 성별 임금 격차 완화 및 환경 대응과 같은 지원이 충분히 확산되지 않을 수 있으며, 노동시장 내 집단 간 격차가 유지되거나 심화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적용 대상 확대 및 보완적 정책 설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참고문헌 •

- GOV UK (2026.03.04.). "Government launches landmark gender pay gap and menopause action plans to help women thrive at work", <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launches-landmark-gender-pay-gap-and-menopause-action-plans-to-help-women-thrive-at-work> (접속일: 2026.03.17.)
- GOV UK (2026.03.04.). "Creating an action plan: guidance for employer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reating-an-action-plan-guidance-for-employers> (접속일: 2026.03.17.)
- GOV UK (2026.03.04.). "Action plans: list of actions",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action-plans-list-of-actions> (접속일: 2026.03.17.)
- GOV UK (2025.08.11.). "How to improve gender equality in the workplace: actions for employer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how-to-improve-gender-equality-in-the-workplace-actions-for-employers> (접속일: 2026.03.17.)
- GOV UK (2025.07.17.). "Menopause in the workplace literature review"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menopause-in-the-workplace-literature-review> (접속일: 2026.03.17.)

호주의 젠더 기반 폭력 가해 행위자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¹⁴⁾

- 젠더 기반 폭력은 권력과 통제의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단순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넘어 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자의 행동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남성 3명 중 1명이 친밀한 관계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행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호주에서도 정책 초점이 기존의 보호(protection) 중심 접근에서 책임(accountability)과 행동 변화(behaviour change)로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실무·연구 간 연계를 강화한 통합적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자와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한다는 점이다.
- 호주의 가해행위자 개입은 전통적인 심리치료 중심 접근과 구별되는 특징을 보인다. 폭력을 개인의 분노, 스트레스, 알코올 문제 등 외부 요인으로 설명하기보다, 가해 행위에 대해 선택(choice)과 책임(responsibility)의 문제로 명확히 규정한다. 또한, 변화는 개인의 내면적 상태 변화뿐만 아니라 행동과 권력 구조의 재구성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관점은 가해 행위자 개입 프로그램의 핵심 교육 내용으로 반영되어 있다.
- 특히, 호주 전역에서 친밀관계 폭력 가해 남성을 대상으로 행동 교정 및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 기관 ‘No to Violence’는 사법 용어인 ‘가해자(perpetrator)’보다는 ‘폭력을 사용하는 남성(men who use violence)’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는 폭력을 개인의 특성이나 정신적 문제로 단순화하기보다 젠더 권력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택된 행동이며 따라서 가해 남성의 책임과 변화가 핵심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 호주의 대표적인 가해 행위자 행동 교정 모델은 전국에서 운영 중인 남성 가해 행위자 행동 변화 프로그램(Men’s Behaviour Change Programs)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14~20주 내외의 집단 기반으로 구성되며, 참여자 간 다양한 토론과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주요 내용은 폭력에 대한 재정의, 책임 인식 강화, 관계 내 평등성과 존중에 관한 교육 등을 포함한다. 특히 일방적인 강의 방식이 아닌 참여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폭력 사용을 정당화하는 인식과 논리를 해체하는 과정이 핵심 요소로 강조된다.
- 한편, 호주에서는 남성 가해 행위자 상담 연계 서비스(Men’s Referral Service)라는 전국 단위 상담 서비스를 통해 폭력을 사용한 남성뿐만 아니라 그의 주변인들도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접근금지명령으로 주거지를 상실한 남성을 위한 임시 숙소도 운영하고 있다(2026.03. 기준, 빅토리아주 한정). 이 외에도 고위험 가해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case management) 및 위험 모니터링 시스템도 병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 상담을 넘어 경찰, 법원, 서비스기관 간 정보 공유를 기반으로 위험 수준을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는 방식이다.

14) 조혜인, 모나시대학교 Global Studies 조교수·서울대학교 여성연구원 객원연구원

- 다문화 국가인 호주의 특성상 이주민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개입 프로그램의 확대 또한 중요한 정책적 특징으로 나타난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주 맥락에서는 경제적·법적 취약성과 젠더 권력관계가 결합되어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보다 정교한 개입이 요구된다. 이를 수행할 전문 인력 양성과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프로그램 설계에도 국가적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 젠더 기반 폭력 이력이 있는 경우 이민법에 따라 추가적인 배우자 초청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다.
- 반면, 파트너 비자 신청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한 경우, 폭력을 경험한 이주민은 가해자를 떠나더라도 영주권 절차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이 제도는 피해를 경험한 이주민의 체류 의존성 문제를 완화하고, 비자 관련 통제(migrant-related coercive control)를 방지하며, 구조적 폭력의 재생산을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다.
- 다만 현재의 이민법이 모든 임시 비자 소지자를 포괄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 가해 행위자 상담 및 행동 교정 프로그램 모델이 서구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은 주요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 관련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호주 내에서도 다양한 논쟁이 존재한다. 특히, 단기적 태도 변화와 장기적 행동 변화 간의 괴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기술 매개 폭력(technology-facilitated abuse)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인력과 교육 체계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도 한계로 제기된다.

• 참고문헌 •

- Domestic, Family and Sexual Violence Commission (2025). New ten to men data shows one in three men report using intimate partner violence. <https://www.dfsv.gov.au/news/new-ten-men-data-shows-one-three-men-report-using-intimate-partner-violence> (접속일: 2026.03.18.)
- Elliott, K., Block, K., Cho, H., & Murdolo, A. (2025). 'It's really important that we listen to them': engaging immigrant men in family violence prevention, *Journal of Family Violence*. 10.1007/s10896-025-00897-y
- No to Violence (2026). Men's Behaviour Change Programs. <https://ntv.org.au/mrs/mens-behaviour-change-programs/>. (접속일: 2026.03.18)
- No to Violence (2026). Men's Referral Services. <https://ntv.org.au/mrs/> (접속일: 2026.03.18)
- 한겨레 (2026). 호주에선 '친밀 관계' 가해자에 임시숙소 교육...한국은 피해자가 집 나가.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246533.html> (접속일: 2026.03.18)

덴마크 정부의 모성 페널티(Motherhood Penalty) 해결 방안¹⁵⁾

- 모성 페널티(motherhood penalty)는 여성이 어머니가 됨에 따라 경력 형성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가리키는 사회과학적 용어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출산과 양육 이후 경력 지속, 임금수준, 노동시간 등 노동시장 전반에서 불이익을 경험하는데, 모성 페널티는 이러한 현상을 개념화한 용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보육정책과 육아

15) 윤선우, 옥스퍼드대학교(University of Oxford) 사회정책학 박사과정

휴직제도는 이러한 페널티를 상쇄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을까? 최근 덴마크의 정책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첫 자녀 출산 이후 모성 페널티로 인해 발생한 노동소득 감소의 약 80%가 제도적으로 보전되었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이에 본고는 모성 페널티 완화를 위한 덴마크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방향, 그리고 그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다른 국가에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 덴마크는 다른 북유럽 국가들과 함께 사회민주주의적 복지체제(social democratic welfare regime)로 분류된다. 해당 체제는 보편주의 원리에 기반해 평등한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하며, 복지 수요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특징을 가진다. 특히 가족정책 영역에서는 부모의 양육비용을 직접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설계된 아동수당과 유급 육아휴직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아동수당의 경우, 덴마크는 1987년부터 미성년 자녀 1인당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2014년 이후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1989년 기준으로 가족은 자녀 1인당 약 5,500 덴마크 크로네(2022년 기준 물가 반영, 한화로 약 130만 원)를 받았으며, 이후 급여 수준은 물가 변동에 따라 조정되어 왔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수당이 가구 단위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어머니에게 지급된다는 점이다(다만, 아버지에게 양육권이 있고 부모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
 - 육아휴직 급여 역시 어머니의 중요한 이전소득 원천이 된다. 2002년 이후 덴마크에서는 여성이 출산 후 9년 이내 사용 가능한 육아휴직으로 52주 동안 총임금의 약 70% 수준을 보장하고 있다.
 - 이 중 24주는 어머니, 2주는 아버지에게 각각 배정되며, 나머지 기간은 부모가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많은 경우 고용주가 총임금의 약 30%를 추가 보전하여 실질적으로 전액 급여가 지급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1989년과 1997년에 각각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기업에서 휴직 기간 중 전액 임금 보전을 의무화하였기 때문이다.
- 이 밖에도 주거수당, 실업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실업급여 혹은 병가급여, 실업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실업급여 등 다양한 현금지원 프로그램 역시 간접적으로 모성 페널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주거수당은 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되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실업보험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실업급여 및 병가급여는 총임금의 약 70% 수준을 보전한다. 실업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녀가 있는 1인 가구에는 총임금의 약 66% 수준이 지급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소득에 따라 급여가 조정된다. 이처럼 덴마크의 여러 현금지원 제도는 자녀가 있는 경우 더 많은 이전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이처럼 덴마크는 모성 페널티가 존재하더라도 제도적으로 자녀가 있는 가정, 특히 여성에게 공적 이전소득이 배분될 가능성이 높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전소득 제도는 모성 페널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완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025년 온라인 선공개된 테레세 베이-스미트 크리스텐센(Therese Bay-Smidt Christensen)과 알렉산드라 킬월드(Alexandra Killewald)의 논문은 이러한 덴마크의

사례에 주목하여 모성이 여성의 노동소득, 이전소득, 그리고 총 개인소득에 미치는 장기적 연도별 영향을 추정하였다. 해당 연구는 모성에 의해 즉각적인 노동소득 감소가 나타나더라도 제도의 설계에 따라 즉각적인 이전소득 증가 역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진은 이를 ‘장기적 모성 이전소득 프리미엄(long-term motherhood transfer income premium)’으로 보았다.

- 그러나 해당 연구 역시 명시하고 있듯이, 이러한 현상이 다른 복지국가들에서도 동일 혹은 유사하게 나타나는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덴마크는 직접적으로 부모의 양육비용을 직접 보전하는 아동수당 및 육아휴직제도뿐 아니라, 주거지원이나 실업보험과 같은 다른 사회정책 영역에서도 자녀가 있는 경우 더 많은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성을 지닌다. 더 나아가 덴마크 사회에 존재하는 ‘휘게(hygge)’라는 문화적 개념은 일과 생산성만을 우선시하기보다 삶의 여유와 질을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한다. 이러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모성 이전소득 프리미엄은 단지 복지제도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과 문화적 토양 속에서 형성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육아휴직제도를 통해 총임금의 약 70%를 보전하면서도 동시에 기업이 나머지 약 30%를 보전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실상 전액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점은 이러한 사회적 가치지향을 잘 보여준다.
- 결국 덴마크에서 모성 페널티 완화가 가능했던 핵심은 정부가 어떠한 삶의 방식과 사회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제도를 설계하였는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복지국가들의 사회문화적 토양과 개별 정책의 지원 방식 및 제도 설계를 함께 고려한다면, 모성 페널티와 관련한 다른 국가들의 사례 역시 보다 입체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Anuradha Mukherjee (2026.02.08.). “Could Denmark’s childcare system be the blueprint to addressing the motherhood penalty?”, <https://www.thehridigest.com/could-denmarks-childcare-system-be-the-blueprint-to-addressing-the-motherhood-penalty/> (접속일: 2026.04.11.)
- The Conversation (2026.02.02.). “Denmark’s generous child care and parental leave policies erase 80% of the ‘motherhood penalty’ for working moms”, <https://theconversation.com/denmarks-generous-child-care-and-parental-leave-policies-erase-80-of-the-motherhood-penalty-for-working-moms-273186> (접속일: 2026.04.10.)
- Therese Bay-Smidt Christensen and Alexandra Killewald (2025). “Can a motherhood premium in public transfer income offset the Danish motherhood earnings penalty?”, <https://academic.oup.com/esr/advance-article/doi/10.1093/esr/jcaf036/8326715> (접속일: 2026.04.10.)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2026-2030 성평등 전략 발표¹⁶⁾

- 2026년 3월 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이하 집행위원회)는 새로운 「2026-2030 성평등 전략」(이하 성평등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교육, 보건,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성평등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을 포괄하고

16) 광서희, 레이든 대학교(Leiden University) 정치학과 강사(Lecturer)

있으며, 사이버 폭력과 인공지능 관련 위험과 같이 최근 대두되는 분야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본 고에서는 최근 발표한 새 5개년 성평등 전략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정책적 의미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 2025년에 집행위원회는 「여성 권리 로드맵(Roadmap for Women's Rights)」을 채택한 바 있다. 해당 로드맵은 장기적 관점에서 성평등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촉구한 문서로서, 유럽연합 27개 회원국과 다수의 시민사회 및 국제기구가 지지한 로드맵이다. 이번에 발표한 성평등 전략은 이 로드맵에서 제시한 여덟 개의 분야별로 좀 더 실질적인 추진 전략을 명시하고 있다.
- 첫 번째 분야는 젠더 기반 폭력이다. 전형적인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여성과 소녀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디페이크 같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에 기반을 둔 목표로, 집행위원회는 음란물이 유포되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 제공 기업을 상대로 미성년자의 해당 콘텐츠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현황 파악 조사도 진행 중이며, 해당 법 전반에 대해 엄정한 집행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집행위원회는 합의 여부에 기반한 강간 법적 규정을 도입하는 국가별 제도적 개혁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회원국들이 2029년 6월까지 수립해야 하는 여성 대상 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국가 행동계획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두 번째는 보건 분야로, 신체 및 정신건강과 관련 의료 시스템 구축에 있어 최고 수준의 기준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세계보건기구(WHO)와 협력해 비장애 및 장애 여성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핵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집행위원회는 유럽의약품청(European Medicines Agency, EMA)과 함께 인체용 의약품 전 주기에서 성인지적 점검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 세 번째 분야는 남녀 동일임금과 경제적 역량 강화, 재정적 독립성 강화를 다루고 있다. 성별 임금 및 연금 격차 해소를 위해 유럽연합 회원국의 임금 투명성 지침(Pay Transparency Directive) 이행을 지원하고,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EIB)과 협력해 여성 기업가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유럽성평등연구소(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EIGE)와 협력해 2026년 중 성 중립적인 직무 평가 및 분류에 관한 지침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 네 번째는 일과 생활의 균형 및 돌봄 분야이다. 집행위원회는 모든 회원국의 유럽연합 일·생활 균형 지침(Work-Life Balance Directive)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2028년까지 보고할 예정이다. 그리고 집행위원회는 돌봄 이행 대화(Implementation Dialogue on Care)를 주최해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와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현황, 돌봄 분야에서 공평한 노동 조건과 직업훈련 등 전반적인 성평등 관련 진전을 점검할 계획이다. 논의 결과는 추후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는 유럽 돌봄 정책(European Care Deal)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 다섯 번째는 노동시장에서 동등한 고용 기회와 적절한 노동 조건 보장을 다루고 있다. 유럽연합 기업 이사회 내 성별 균형 지침(Directive on Gender Balance on Corporate

Boards)은 기업 리더십에서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입법적 틀로, 여성 임원 할당 비율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올해 회원국들의 해당 지침 이행 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그리고 2029년까지 해당 지침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직장 내 성희롱이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여섯째 분야는 양질의 교육과 성평등이다. 집행위원회는 올해 수학, 과학 및 디지털 기술 분야를 포함한 기초 기술 습득 강화를 위한 종합 교육 패키지를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집행위원회가 제안하고 유럽기술연구소(European Institute of Technology)가 주도하는 이공계 및 수학 분야 교육 전략계획(STEM Education Strategic Plan)의 일환으로 여학생들의 이공계 분야 진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본 성평등 전략에서는 2028년까지 100만 명의 여학생을 이공계 및 수학 분야로 유입시키겠다는 광범위한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일곱 번째 분야는 정치와 공공행정 영역에서 성평등하고 안전한 참여 확대를 다루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정치·공공행정·의회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을 촉진하기 위한 회원국의 제도적 조치 현황을 파악하고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정책제언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 사례뿐만 아니라 그동안 진전을 나타낸 과정을 평가하여 향후 추가 조치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 마지막 분야는 여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제도적 장치 구축이다. 유럽연합의 모든 정책 전반, 특히 기후 및 환경 정책 등 범 분야 영역에서 성주류화를 확대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평등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Equality)가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각 총국(Directorates General), 유럽대외관계청(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EEAS)의 평등 조정관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이 밖에도 「2026-2030 성평등 전략」은 유럽연합 회원국 차원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성평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도 명시하고 있다. 본 전략에서는 앞으로 새로운 「2028-2034년 성평등 행동계획(Gender Action Plan IV for 2028-2034)」, 「여성·평화·안보 행동계획(Action Plan for Women, Peace and Security)」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성인직적 인도적 지원 정책에 부합하는 신규 핵심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를 통해 성·재생산 관련 보건 접근성을 개선하고 성별 기반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자 한다.
- 이전에 집행위원회에서 「2020-2025년 성평등 전략」을 수립·이행하는 동안 유럽연합 차원에서 성평등과 관련된 여러 입법 조치들이 도입되었다는 점은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최근 5개년 성평등 전략이 발표되었는데, 세부계획들이 기존 유럽연합의 지침이나 핵심사업 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다양한 현안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 European Commission (2025.03.07.). "A Roadmap for women's rights – Commission Communication," https://commission.europa.eu/document/0c3fe55d-9e4f-4377-9d14-93d03398b434_en (접속일: 2026.04.12.)
- European Commission (2026.03.05.). "Commission presents new Gender Equality Strategy 2026–2030 for a more equal, cohesive and successful Europe,"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6_526 (접속일: 2026.04.12.)
- European Parliament (2026.03.05.). "International Women's Day: ICM on the occasion of International Women's Day (IWD) 2026–5 March," <https://www.europarl.europa.eu/committees/en/fe/mm/international-women-day> (접속일: 2026.04.12.)

여성과 소년·소녀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영국 범정부 전략¹⁷⁾

- 2025년 12월, 영국 정부는 『폭력과 학대로부터 자유: 여성과 소년·소녀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범정부 전략(Freedom from Violence and Abuse: a cross-government strategy to build a safer society for women and girls)』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여성과 소년·소녀 대상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을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로 규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뿐 아니라 공공기관, 기업, 시민사회, 개인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영국 정부는 여성 혐오적 태도와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부추기는 문화적 규범이 가정, 학교, 직장뿐만 아니라 공공장소, 온라인 공간 등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피해자와 생존자를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 내부에도 오랫동안 존재해 왔음을 인정하면서, 경찰과 형사사법제도의 대응 한계,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접근성 문제, 정책 우선순위에서의 배제 등 제도적 한계를 포함한 구조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번 전략은 향후 10년 내 여성과 소년·소녀에 대한 폭력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 대응이 부처 간 분절된 정책 구조와 단기 예산 중심 운영 방식으로 인해 장기적인 성과를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온라인 기반 폭력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학대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청소년과 청년층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주요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성과 소년·소녀 대상 폭력 대응을 정부 임기나 단기 예산 주기를 넘어서는 범정부적 과제로 설정하고, 사회 전반의 공동 책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다. 전략 수립 과정에는 형사사법기관, 여성 폭력 대응 전문가, 시민사회뿐 아니라 피해자와 생존자가 직접 참여하여 서비스 접근, 주거지원, 복지제도, 의료 체계 이용 과정에서 마주한 구조적 장벽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며 근거 기반 정책 설계를 뒷받침하였다.
- 이번 전략은 다음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정책 이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17) 이지원, 런던열대의학위생대학(London School of Hygiene & Tropical Medicine) 개발보건학 석사

성과 점검과 새로운 증거 반영을 통해 대응 방식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1) 예방 및 조기 개입

- 이는 폭력 발생 이후 대응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폭력이 반복·재생산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적 환경을 조성하는 접근을 의미한다. 특히 학교 기반 예방교육과 사회 인식 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폭력 발생 위험 요인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를 위해 건강한 관계 형성과 동의 개념¹⁸⁾에 대한 학교 교육 강화, 여성 혐오적 콘텐츠 대응, 행동 변화 캠페인 확대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되는 새로운 형태의 유해 행위에 대응하여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도 포함된다. 특히 남성과 소년을 잠재적 가해자가 아닌 변화의 주체이자 동반자로 참여시키는 정책 방향이 강조된다.

(2) 가해자에 대한 책임 강화

- 영국 정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다른 중대 범죄와 동등한 수준으로 다룰 수 있도록 형사사법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경찰 조직 내 공공안전 대응 역량을 전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특히 정보 기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개선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범죄 탐지와 예방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가해자 식별과 조기 개입 역량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수사·기소·처벌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응 공백을 줄여 가해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운 사법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하였다.

(3) 폭력과 학대의 피해자와 생존자 지원 강화

- 영국 정부는 피해자 중심 접근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주거, 의료, 복지, 사법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여 보다 일관되고 접근 가능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 특히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에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하며, 안전한 주거지원을 포함한 회복 중심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더불어 피해자가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겪는 반복 진술 부담과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트라우마 인지 기반 사법 절차를 강화하고, 피해자의 경험과 안전을 고려한 환경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사법 접근성과 회복 지원을 함께 강화하는 것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안했다.

- 이와 함께 영국 정부는 여성과 소녀 대상 폭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입법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2025년에는 데이터 법(Data Act)을 통해 동의 없는 성적 딥페이크 제작을 범죄로 규정하였고, 사적 이미지의 비동의 유포, 스토킹 가해자 정보 공개 제도 개선, 음란물 내 여성 대상 폭력적 묘사 규제 강화 등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폭력 대응을 확대하였다. 또한 공공장소 성희롱 방지법(Public Sexual Harassment Act)을

18) 영국의 관계·성·건강 교육(RSHE)에서는 ‘동의(consent)’를 성적 관계에서의 자발적 합의뿐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와 취약성에 대한 이해, 권력관계에 대한 인식, 배려와 책임 있는 관계 형성을 포함하는 윤리적 관계 교육의 핵심 요소로 다루고 있다.

기반으로 고의적 괴롭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다.

- 한편, 일부 시민사회와 전문가 집단에서는 전략 발표가 지연되었고 목표 달성 수준에 비해 재정 지원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전략의 실행 가능성과 정책 지속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며, 향후 정책 효과는 부처 간 협력 수준, 지역 단위 실행 역량, 안정적인 재정 지원 확보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측면에서 여성과 소녀 대상 폭력을 범정부 차원의 장기 정책 과제로 명확히 설정하고, 예방 중심 접근과 피해자 중심 대응을 통합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피해자와 생존자의 경험을 정책 설계에 반영하고 디지털 폭력 대응을 위한 입법과 제도개선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은 근거 기반 정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정권 교체나 재정 우선순위 변화 속에서도 부처 간 분절화를 최소화하고 정책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이 전략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 UK GOV (2026.04.14.). "Freedom from violence and abuse: a cross-government strategy to build a safer society for women and girl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freedom-from-violence-and-abuse-a-cross-government-strategy/freedom-from-violence-and-abuse-a-cross-government-strategy-to-build-a-safer-society-for-women-and-girls-accessible#fn:7> (접속일: 2026.04.17.)
- UK GOV (2025.10.23.). "Criminal Justice System statistics quarterly: June 2025",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criminal-justice-system-statistics-quarterly-june-2025> (접속일: 2026.04.17.)
- UK GOV (2025.12.19.). "Relationships and sex education (RSE) and health education",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elationships-education-relationships-and-sex-education-rse-and-health-education> (접속일: 2026.04.17.)
- The Guardian (2025.12.18.). "UK government strategy to protect women and girls from violence 'seriously underfunded'",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5/dec/18/uk-government-strategy-to-protect-women-and-girls-from-violence-seriously-underfunded> (접속일: 2026.04.17.)

국내*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성평등가족부]

「위안부피해자법」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2026년 2월 12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공포 후 3개월 후 시행)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02.12.]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10862

성평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신고·지원 창구 하나로 통합

-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에 대한 밀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 지원을 확대하고, 23일(월)부터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원스톱 통합 누리집(이하 디지털성범죄STOP, d4u.stop.or.kr)’을 대국민 공개한다고 밝힘.
- 먼저 이번에 공개되는 디지털성범죄 STOP(d4u.stop.or.kr)은 정부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24.11.6.)의 주요 과제로 추진하는 것임.
 - 피해 대응 요령과 지원 절차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으며, 특히 중앙 디성센터,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분산되어 있던 신고창구를 하나로 통합하여, 피해자뿐 아니라 제3자도 불법 촬영물 등을 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했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국내동향」 중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의 주요 보도자료를 정리한 것임.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02.23.]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10877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9명 대상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281건 의결

- 성평등가족부는 2월 19~20일에 제4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9명을 대상으로 총 281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함.
 -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37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86건이다. 제재 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2억 1천만 원이며, 평균 채무액은 약 4천5백6십만 원임.
- 출국금지 등 제재조치는 이행명령 등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음.
 - 제재조치가 처음 시행된 2021년 이후 제재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누적 건수는 3,642건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및 처벌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의결 현황('21.10.~'26.2)〉

구 분	계	'21.下	'22	'23	'24	'25
출국금지 요청	2,047	9	116	367	655	763
운전면허 정지 요청	1,221	16	215	230	266	436
명단공개	374	2	28	42	26	190
합계	3,642	27	359	639	947	1,389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02.26.]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10887

성평등가족부, 전국 가족센터 통해 1인가구 지원 강화

- 성평등가족부는 “1인가구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 가족센터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힘.
 - * 전체 가구 중 1인가구 현황(인구주택총조사, 국가데이터처) : ('15) 5,203천 가구 (27.2%) → ('24) 8,045천 가구(36.1%)
- 식생활·가사·건강관리와 교류·소통 등 일상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연령별, 지역여건별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임.
 - * 1인가구 어려움(가족실태조사, 성평등가족부, '23) : 균형 잡힌 식사 어렵다(42.6%), 아프거나 위급 시 대처 어렵다(37.6%) 순 / ‘문제·걱정거리를 편하게 이야기할 사람 없음’(24.6%, '20년 比 9.4%p ↑)
- 지난해에는 전국 186개 가족센터에서 운영한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에 연간 약 9만 명(중복 인원 포함)이 참여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생활역량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됨.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03.03.]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0892

성평등가족부, '25년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발표

-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는 95명으로 전년(127명)보다 약 25% 감소했다고 밝힘. 이는 2021년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2025년에 감소세로 전환된 것임.
 -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일정 기간 운영·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2016년부터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 2025년 기준 점검 대상 종사자는 약 413만 명으로 전년보다 22만 명 증가했으나, 적발 인원은 32명 줄었음. 특히 교육기관과 사교육 분야에서 취업제한 위반 사례가 눈에 띄게 감소함.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03.12.]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0910

「가정폭력방지법」·「청소년 보호법」 등 3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성평등가족부는 가정폭력 대응 실효성 제고, 청소년 보호제도 개선,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개 법률 개정안이 3월 12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이번 개정으로 가정폭력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청소년 보호제도는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될 예정임.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이번 개정안은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사법경찰관리 등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 기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 이를 통해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는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돌봄 지원법>

- 개정안은 아이돌봄비 채용 등 관련 업무를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03.12.]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0911

성평등가족부, 전국 새일센터 통해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운영

- 성평등가족부는 경력보유여성의 취업지원과 재직여성의 경력개발·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159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에서 744개의 직업교육훈련 운영한다고 밝힘.
- 올해는 특히 지역 인구구조와 산업 특성, 일자리 규모 등을 반영해 지방정부가 직접 지역새일센터 및 일자리 연구기관과 협업하는 ‘지역핵심산업’ 과정을 새롭게 도입함
- 2026년 직업교육훈련은 ▲고부가가치 과정 103개 ▲지역핵심산업 과정 52개 ▲기업 맞춤형 과정 152개 ▲전문기술 과정 92개 ▲창업 과정 57개 ▲일반훈련 과정 288개 등이 선정됨

<과정별 주요 사례>

- 고부가가치 과정 : AI기반 UX/UI 콘텐츠 디자인, AI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기획, 드론영상 3D 맵핑 인력양성 과정 등
- 지역핵심산업 과정 : 인천 제약바이오 품질관리 실무(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울산 산업안전 전문인력 양성(고위험 산업 안전관리), 충북 등굴 생태지질 관광 기획(단양 유니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 거제 AM 조선설계 전문가(스마트 조선소 전환 정책) 등
- 기업맞춤형 과정 : 한국 세무사협회 연계 맞춤형 세무사무원 과정 등
- 전문기술 과정 : 캐릭터 이모티콘 디자이너 등
- 창업 과정 : 반려동물 상품 전문가 등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03.19.]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0927

성평등가족부, 안전하고 성평등한 축제(기념행사)를 위한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 적용

- 성평등가족부는 4월 1일(수)부터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축제·기념행사에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적용한다고 밝힘.

- 성별영향평가 : 법령과 주요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성별 특성에 따른 수요와 참여 균형, 성별 고정 관념 해소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개선하는 제도

-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는 담당자가 직접 표준화된 체크리스트에 따라 사업을 점검하고 개선 계획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각 사업의 성평등 운영 수준을 스스로 진단해 신속하게 개선 가능

* (‘24년) 일자리사업, 도서관사업, (‘25년)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사업, CCTV 설치·운영사업

- 축제·기념행사 담당자는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 표에 따라 조례·지침 마련과 기획, 진행, 사후평가 등 전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체계적으로 점검·반영

* ▲(조례·지침) 성평등 축제 지침 등, ▲(기획) 대행기관 과업 지시,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 주요 연사 성별 균형 등, ▲(진행) 모니터링, 유아동 편의시설, 홍보물 등, ▲(평가) 성별 만족도 조사 등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03.23.]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0933

정부,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노동계-정부 간 협의 틀 구축 추진

-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한다는 국정 기조 하에서, 관계 부처 간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마련하여 노동계와 소통·협의를 해 나가기 위해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함.
 - 이 협의체는 돌봄 분야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관련된 제도개선 등 논의를 위한 것으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노동계와 정부 간 첫 번째 공식적인 협의체 사례임.
- 노동계(민주노총 돌봄 공동교섭단 등)는 3월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에 맞춰 돌봄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하였고,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상 교섭 대상 해당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면밀한 법적 검토를 병행하면서 노동계와 충분한 사전 협의 및 소통을 통해 상생의 물꼬를 트으려는 계획임.
 - * 노·정 협의체 참여 범위
 - (노동계) 민주노총 총연맹 + 5개 노조(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보건의료노조,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등)
 - (정부) 복지부(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생활지원사, 아동돌봄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소관), 성평등부(아이돌봄사 소관), 교육부(보육대체교사 소관), 노동부 등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03.25.]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0942

성평등가족부, 삭제요청 자동화·AI 성착취 탐지·딥페이크 식별 시스템 도입

-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①삭제요청 자동화, ②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 대응, ③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등 3대 핵심 기술 시스템을 도입한다. 기존 수동·사후 대응의 한계를 보완하고, 피해자 중심의 신속·선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힘.
 -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기존의 수동적이고 사후적인 피해자 보호의 한계를 보완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자동화·지능화하여 대응 속도와 정확도를 대폭 강화함.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04.01.]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0966

성평등가족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배포

- 성평등가족부는 국가기관, 지방정부 및 공직유관단체 등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개정·배포

- 이번 매뉴얼은 2023년 발간된 기존 매뉴얼을 보완한 것으로, 각 기관이 내부 실정에 맞는 사건처리 지침을 수립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최근 법령 개정 사항과 현장 사례를 반영하여 실효성 강화
 - 특히 2025년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양성평등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국가기관 등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근무 장소 변경, 전보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사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비밀누설을 금지하는 등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조치 세부 예시와 단계별 처리 절차 등을 담고 있음.
- * 「성폭력방지법」 및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25.4.22.) 및 시행(’25.10.23.)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04.03.]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0970

성평등가족부, 공공부문 150여 개 기관 대상 조직문화 진단·맞춤형 개선 지원 추진

- 성평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15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사업설명회(이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기관별 조직문화 진단과 맞춤형 개선과제 도출, 단계별 추진체계*, 기관담당자의 역할 등 사업의 방향과 절차를 종합적으로 공유
 -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사업은 공공부문 구성원의 성평등 인식을 높이고, 조직 내 정책과 제도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6년에는 신규 조직진단 58개 기관을 포함하여 총 152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직진단, 개선지원, 이행지원 등 단계별 맞춤지원 추진
 - * 신규 조직진단 58개 기관, 개선지원 40개 기관, 이행지원 54개 기관
-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사업은 ’20년 시범사업 이후 현재까지 총 7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직진단(351개), 개선지원(218개), 이행지원(155개)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며 실질적인 조직변화를 이끌고 있음.
 - 특히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개선계획을 수립한 기관 비율이 ’22년 60%에서 ’25년에는 88.7%로 늘어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기관들의 의지와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개선계획 수립률 (’22) 60.0% → (’23) 68.8% → (’24) 81.2% → (’25) 88.7%
 - 또한 행정통계 분석 결과 여성관리자 확대, 일·생활 균형 제도 활성화 등 정책 효과와 현장의 수용성이 함께 확인되고 있음.
 - * ’24~’25 자체 개선계획 수립 2,632개 중 2,309개 이행 완료(이행률 87.7%)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04.13.]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0990

성평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자 확대

- 성평등가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와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월 21일(화) 공포·시행된다고 밝힘.
 - 개정된 시행령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퇴소 이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원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내용 수록
 - * (관련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제17조의2(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04.20.]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n=711011

성평등가족부, 제19차 양성평등위원회 개최하고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등 7개 안건 논의

- 성평등가족부는 국무총리 주재 ‘제19차 양성평등위원회’를 5년 만에 대면 개최
 -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5년 추진실적 및 '26년 시행계획」과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방안」,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성과 및 향후 운영 계획」,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등 7개 안건 논의

회의안건

- ①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5년 추진실적 및 '26년 시행계획
- ②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방안
- ③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성과 및 향후 운영 계획
- ④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24.11월)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 ⑤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9차 심의 권고 이행 점검 결과
- ⑥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4기 국가행동계획('24-'27) '25년 이행 점검 결과
- ⑦ '24년 국가 성평등지수 측정 결과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04.20.]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n=711013

성평등가족부, 제8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민간위원 신규 위촉

- 성평등가족부는 인공지능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정책 자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성평등, 고용·돌봄 등 정책 분야에 더하여 인공지능 및 미래전략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제8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민간위원을 새롭게 위촉
 -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 수행

- 성평등가족부는 그간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정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별 간 불균형과 차별 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개선
 - 주요 개선 사례로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처리 대응 의무 신설,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에 고객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보호 규정 포함, ▲육아기 근로자의 시차 출퇴근제 장려금 확대(월 최대 40만 원) 등 포함
- 2026년에는 주요 4개 분야의 정책을 선정하여 심층 분석 진행, 그 밖에도 노동부, 농식품부, 국방부 등 20여 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 중인 국정과제 등 주요 사업 또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성별격차 완화 등 개선 추진 예정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04.13.]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0990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보호 확대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관 법률 개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 확대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관 법률 개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청소년·여성폭력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둬.
 - 특히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제도와 명칭을 법률에 반영하고,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등 제도 운영의 신뢰성 제고
 - 각 법률안 주요 개정 내용
 -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스톱킹 사건 현장에서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성폭력 피해자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법적 명칭 대신 실제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 「성폭력방지법」 제18조에 따른 시설로,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 등 연계, 수사지원 및 그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04.23.]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023

성평등가족부, 성착취 피해아동 등 상담·법률·의료 4만여 건 지원

- 성평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2025년 연차 보고서’ 발간
 - 지난해 전국 17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에서 아동·청소년·보호자 등 2,873명에게 3만 9,632건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집계
 - * (지원인원) ‘22년 1,558명(아동·청소년 862, 보호자 696) → ‘23년 1,919명(아동·청소년 952, 보호자 967) → ‘24년 2,743명(아동·청소년 1,187, 보호자 1,556) → ‘25년 2,873명(아동·청소년 1,226, 보호자 1,647)
- 주요 분석 결과
 - (총괄) 지난해 전국 17개 지원센터에서 아동·청소년 1,226명과 보호자 1,647명, 총 2,873명에게 39,632건(전년 대비 11.7% 증가)의 지원서비스 제공
 - (피해지원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 아동·청소년은 총 1,226명으로 여성이 1,209명(98.6%), 남성이 17명(1.4%)으로 집계됐음. 연령은 14~16세가 567명(46.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7~18세가 403명(32.9%), 19세 이상이 165명(13.5%)
 - (피해 경로) 지원센터가 지원한 아동·청소년의 피해 경로는 채팅앱 539명(44.0%), 사회관계망서비스(SNS) 474명(38.7%)으로 온라인 매체를 통한 피해 82.7%
 - (피해 유형) 피해 유형(복수 응답)을 살펴보면 조건만남이 942건(37.9%)으로 가장 높았으며, 폭행·갈취 289건(11.6%), 디지털 성범죄 280건(11.3%), 길들이기 206건(8.3%) 순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04.26.]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030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률안 5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성평등가족부는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와 청소년·가족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시해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의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였고, 법률의 예측 가능성 및 명확성 제고
 - 「한부모가족 지원법」 개정안
 - 한부모 복지시설에 대한 제재처분 상한을 명확히 하고 폐쇄 처분 시 직접강제 절차 적용을 규정해 집행과정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 수록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를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기관으로 명시하고, 상담 과정에서 범죄 사실 인지 시 수사기관 신고 의무 부여
 -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개정안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도록 규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민간위원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도록 규정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05.07.]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11056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AI로 여는 복지·돌봄의 새로운 미래 논의

- 보건복지부는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TF)」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상반기 중 발표할 「복지·돌봄 AI 혁신계획(26-30)」의 추진전략과 핵심과제들을 구체화함.
- 데이터와 AI 기술이 제도와 사람을 연결하고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현장 공무원들의 소모적인 행정 업무를 줄여줄 복지행정 지원체계(에이전트) 도입·확산 방안, 복지빅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기반 마련 등
- 돌봄 대상자가 집 또는 시설에서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술과 인적 서비스의 효과적인 결합 모델을 구축하고 확산하는 방안, 혁신적 돌봄 기술을 육성·실증 확산하기 위한 제도·인프라 확충 방안 등
- 복지·돌봄 AI 혁신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AI 윤리를 확립하고 만·관·학 등 다부문이 협력해 빠른 기술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적응적 거버넌스 구축, 현장 종사자와 서비스 이용자들의 AI 활용 역량 강화 방안 등도 과제화

•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02.26.]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10877

보건복지부, 도서·벽지 등에도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사회서비스 제공이 취약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2026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이번 사업은 2026년 3월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따라 공급기관이 부족해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필수 사회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도서·벽지 등을 대상으로 취약지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둬.
-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26.3.27. 시행
- 시·도가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해 3~5개 내외의 서비스를 패키지로 구성하여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며, 단편적 서비스 제공이 아닌, 취약지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지원을 추진함.

•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03.11.]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9379&tag=&nPage=2

보건복지부, 가족돌봄 등 위리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 시행 기반 마련

- 보건복지부는 3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가족돌봄 등 위리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힘.
- 이번 시행령은 위리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족돌봄 등 위리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됨.

•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03.17.]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9476&tag=&nPage=3

보건복지부, 입양절차 개선 방안 마련

- 보건복지부는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비 양부모의 편의를 높이고 입양절차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입양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힘.
- 이번 개선방안은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이 보다 편리하게 절차에 참여하고, 절차 진행 과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입양 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지연을 줄여 원활한 진행을 지원에 중점을 둠.

•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03.19.]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9503&tag=&nPage=3

아동수당 지원 대상과 금액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20(금)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힘.

<주요 개정 내용>

<현행>	<개정>
대상자 8세 미만	대상자 13세 미만(연(年) 1세씩 단계적 확대) * ('26) 9세—('27) 10세—('28) 11세—('29) 12세—('30) 13세 미만
지급금액 매월 10만 원	지급금액 수도권 매월 10만 원 비수도권 매월 10.5만 원 인구감소지역우대 매월 11만 원(상품권 12만 원) 인구감소지역특별 매월 12만 원(상품권 13만 원)

- 3월 24(화) 「아동수당법」(3.20. 공포)이 위임하고 있는 지역별 아동수당 추가금액을 구체화하는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03.20.]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9534&tag=&nPage=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03.24.]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9763&tag=&nPage=2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기본계획(제3차) 수정안」 마련

- 보건복지부는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 분야 전문가 정책 간담회 개최
 - 2024년 수립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대해 새 정부의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국정목표와 복지철학을 반영하고, 인구구조 및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최근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정·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어 현 사회보장 정책환경을 분석하고, 새 정부의 사회보장 비전과 목표를 수정계획에 적절히 반영하며, 사회보장 추진 방향 및 핵심 정책과제 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

•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04.03.]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9979&tag=&nPage=3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대상·금액 확대, 4월부터 지급 시작 안내

-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0일에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4월 24일(금)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한다고 밝힘.
 -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해 왔으나,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지급 연령을 2026년 9세 미만으로 높이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은 매월 5천 원~2만 원 추가 지급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1만 원 상당액 추가 지급
 - * (매년 1세씩 단계적 상향) (‘26) 9세 미만 → (‘27) 10세 미만 → (‘28) 11세 미만 → (‘29) 12세 미만 → (‘30) 13세 미만

•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04.23.]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0257&tag=&nPage=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인구전략위원회’,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도록 예산사전협의권 등 위원회 권한 강화

- 보건복지부는 5월 7일(목)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제명을 변경하면서, 법률의 목적 및 정책 범위를 현행 저출생·고령화 대응에 더해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

- 의 다양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반으로 확대
-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변경하면서, 위원회의 정책 범위 확대 및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규모 확대

•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05.07.]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0448&tag=&nPage=2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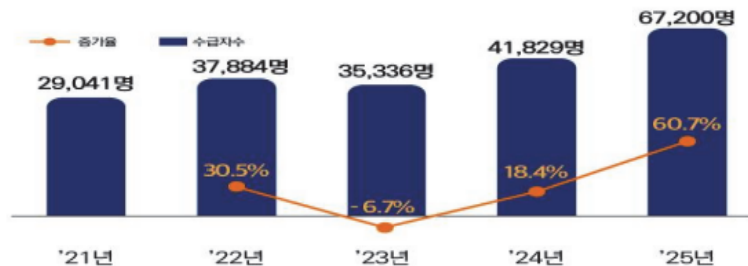
아빠 육아휴직 60% 증가,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 역대 최대

-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입어 남성의 출산·육아 참여가 크게 늘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힘.
- 2025년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60.7% 증가한 수치로 여성 증가율(29.1%)보다 높게 나타남.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섰으며, 전년 대비 33.3% 증가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구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유사산, 난임 포함)	배우자 출산휴가	합계
2021년	110,555명	16,689명	71,429명	18,270명	216,943명
2022년	131,084명	19,466명	74,310명	16,168명	241,028명
2023년	126,008명	23,188명	74,536명	15,797명	239,529명
2024년	132,535명	26,627명	79,368명	18,241명	256,771명
2025년	184,329명	39,400명	94,247명	24,412명	342,388명

<최근 5년간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현황>



•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02.24.]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987

고용노동부, 성인지 관점의 고용노동정책 발굴 추진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월 4일(수), 권창준 차관 주재 '26년 제1차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에서 한국과 스웨덴이 양국의 노동시장 성평등 정책을 소개하고 시사점에 대해 논의함.
- 우리나라의 일·가정 양립 등 성평등 관련 제도는 그간 빠른 속도로 변화·발전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가 많은 참고가 되어왔음*.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성평등 정책 발전을 위해 주요국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스웨덴 고용부 성평등청(Gender Equality Agency) 국제조정관을 초청하여, 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양국 정책에 대해 논의함.
* 예: '19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총 5일 유급 3일→총 10일 유급 10일) 시 북유럽 사례(스웨덴 10일, 핀란드 9일 등) 참고

•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03.04.]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019

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동료노동자에게 업무분담 지원금 지급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3월 26일부터 41일간 입법예고 함.
- 주요내용은 ①업무분담 지원금 대상 확대 ②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개선 ③단기 육아 휴직 지급규정 정비 ④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⑤재직자 주말 직업훈련 수당 근거 마련임.

•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03.26.]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135

고용노동부,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 2일→4일로 확대 안내

-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힘.
 -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증가
 -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가 명시되고,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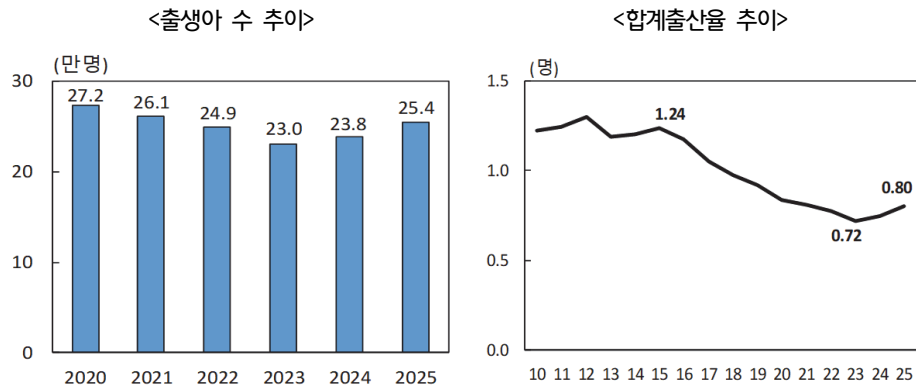
•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04.23.]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29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합계출산율 1월 0.99명 월별 최고치 경신... 혼인·인구구조·인식변화 등 복합요인 작용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6년 1월 합계출산율은 0.99명으로 지난해 1월(0.89명) 대비 0.10명 상승하여 월별 합계출산율이 발표되기 시작한 2024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힘.
- 2026년 1월 인구동향(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6,916명(전년동월비 11.7%)으로 2024년 7월 이후 19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음.



■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증가의 주요 요인

- ① 에코붐세대* 여성이 주출산 연령에 진입하면서 가임여성 인구규모가 증가 영향
*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90~96년생을 지칭
- ② 코로나19로 인한 혼인 지연이 해소되면서 혼인건수가 꾸준히 증가
* 혼인건수(만 건): '22년 19.2, '23년 19.4, '24년 22.2, '25년 24.0
- ③ 혼인 및 출산에 대한 인식변화, 저출생 대응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 등 정책적 효과
* 결혼 긍정인식: ('24.3) 70.9% → ('24.9) 71.5% → ('25.3) 72.9% → ('25.8) 74.5%
* 무자녀가구 출산의향: ('24.3) 32.6% → ('24.9) 37.7% → ('25.3) 39.7% → ('25.8) 40.2%

• 참고문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2026.03.25.]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55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생 인식조사 결과 발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정부의 저출생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제5차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를 실시(3.25~3.31)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
-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올해 3월 조사에서는 '24년 3월 대비 결혼 긍정인식이 9.8%p 늘어난 65.7%로 나타났고, 자녀 필요성과 출산의향도 각각 12.6%p, 11.2%p 상승

• 참고문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2026.05.07.]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564&listLen=10&searchKeyword=&position=M&pageIndex=1>